

소감

조정 신청서

신청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번지
대표이사 김 창 수

- 피신청인
1. [Redacted]
서울시 중구 [Redacted] 바이크
 2. [Redacted]
서울시 성북구 [Redacted] 아파트 [Redacted] 동 [Redacted] 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

신청 취지

1. 소외 김 [Redacted]이 2013. 9. 25. 23:45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에서 [Redacted]호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신청인 소유 서울성북타 [Redacted]호 이륜차를 접촉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63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3193-11160062-10050991

3193-11160062-10050991

3782-3193-11160062-10050991

신 청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신청인은 자동차손해보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redacted]와 개인 용에니카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보험계약의 내용

- 상 품 명 : 개인용애니카
- 계약번호 : [redacted]
- 피보험자 : [redacted]
- 보험기간 : 2013. 1. 18. - 2014. 1. 18.
- 대물한도 : 100,000,000원
- 담보사항 : 대인1, 대인2, 자손, 대물, 차량
- 특약사항 : 만26세이상, 기본

나. 피신청인 2. [redacted]는 소외 [redacted]에 의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서울성북 터 [redacted]호 이륜차 듀가티(이하 "피해차량" 이라 함)의 차주로서, 신청인에게 차량수리 비 및 대차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자입니다(갑제1호증), 그리고 피신청인 1. [redacted]은 피해차량 수리처인 [redacted]바이크의 대표이자 피신청인 2. [redacted]로부터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직접 손해(수리비)와 간접 손해(교통비) 일체를 위임받은 자입니다(갑제2호증).

2.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쟁점사항

1) 사고내용

소외 [redacted]는 2013. 9. 25. 23:45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역사공원역 부근에 서 [redacted]호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하려다 직진하는 피해차 량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갑제3호증1 내지 2).

3193-1160263-10050931

3193-1160263-10050931

이 사건 사고는 소외 김○의 안전운전태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신청인 또한 전방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있다면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차량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속도를 늦추어 양보운전을 하여야 하고, 한편 이를 보지 못하였다면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과실 20%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금 전체에서 상계 되어야 합니다.

2) 쟁점사항

갑제2호중에서도 확인되듯이, 당해 사고건은 피해차량의 좌측에 경미한 스크래치가 난 정도의 사고 건으로 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하였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륜차 수리업체로부터 임의로 발행받은 수리비 38,576,037원(갑제4호중)과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렌트를 사용하겠다고 하며 과도한 렌트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요구를 해결하고자 절충하였으나 결렬되어 당해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는 결론에 이르러 조정신청을 제기하게 된 점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필요하고도 상당한 수리비 및 통상의 대차료

1) 확대·편승 수리 제외 및 적정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

대법원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되어야 하나 그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른바 편승수리나 파잉수리 등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여(대법원 1990. 3.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편승수리나 파잉수리 등의 비용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13635201-0920811-0616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거나 지급할 정비요금에 관하여, 대물배상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갑제5호증 100505931)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신청인이 보험자로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피신청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수리비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사고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에 한정되어야 하고, 확대·편승 수리비는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적정 수리비

소의 [redacted]과 신청인은 2013. 9. 25.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파손부위 및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제3종 대륜/차량 손해사정업체인 [redacted] 손해사정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수리비는 총 3,560,000원(피신청인 과실 20% 적용)의 수리비가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의견 회신받았습니다(갑제6호증 20p).

3) 통상의 간접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예상 수리기간은 약 1일(실제 부품교환기간 1일)이며, 그 기간동안의 교통비는 총 90,000원(=300,000원×1일×30%)에서 피신청인 과실 20%를 적용한 72,000원(=90,000원×20%)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적정 간접손해 지급채부라 하겠습니까(갑제6호증 22p).

4) 소결

이상으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적정 수리비는 3,560,000원,

13635201-0920811-0616

적정 간접손해는 72,000원으로 합계 3,632,000원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적정 손해배상금으로 이를 초과하는 지급채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 및 대차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는 금 3,63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신청인은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부분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수리비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1호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 갑 제2호증 위임장
- 갑 제3호증의1 가해차량 파손사진
- 2 피해차량 파손사진(좌측 손상)
- 갑 제4호증 견적서
- 갑 제5호증 자동차보험약관
- 갑 제6호증 손해사정서

2013. 10. .

위 신청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창 수(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3193-11160363-10650991

3193-11160753-10650991

3193-11160263-10650991

SCORON CAPITAL SEC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연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3193-11160263-10030597

3193-11160263-10030597

3193-11160263-10030597

사 건 2014나3979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4가단50516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7.

판 결 선 고 2015. 4.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피고 A에 대하여는 4,155,441

원, 피고 B에 대하여는 283,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193-11160263-10030517



본 판결문을 판결서 인터넷판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14

3193-11160263-1003069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632,000원(피고 A에 대하여는 3,560,000원, 피고 B에 대하여는 7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632,000원(피고 A에 대하여는 3,560,000원, 피고 B에 대하여는 7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갑 제2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E 이

3193-11160263-1003061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알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14

륵[(듀카티(DUCATI) 1098S 2007년형, 이하 '피고 오토바이' 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F은 2013. 9. 25. 23: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을 지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서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피고 오토바이를 원고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오토바이와 피고 B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이 파손되었고, 피고 B는 'G'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업을 하는 피고 A에게 피고 오토바이와 헬멧의 수리를 위탁하면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피고 오토바이와 헬멧의 수리비를, 피고 B는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각 청구하였다.

2. 확인의 이익

살피건대, 피고 B가 피고 A에게 피고 오토바이의 수리를 위탁하면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도 위임한 사실, 피고 A이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피고 오토바이를 수리한 다음 원고에게 그 수리비를 직접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자동차 정비업자는 보험가입 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A은 피고 B로부터 피고 오토바이의 수리를 위탁받으면서 묵시적으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연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14

3193-11160263-10030557

포함하여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받았고, 피고 오토바이의 소유주인 피고 B가 원고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 A이 채권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목시적인 채권양도의 봉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 A의 수리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은 피고 오토바이의 소유주인 피고 B가 청구하는 것이고,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소의 이익도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리비는 3,560,000원이고, 그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는 72,000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3,560,000원,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72,000원을 각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은 피고 오토바이의 수리하면서 26,324,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오토바이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로 18,1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고 A에게 26,324,000원, 피고 B에게 18,15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룬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갈 제23호의 영상을 종합하면, 자동차 운전업무에 중

3193-11160263-10030557



본 판결문은 판례서 인터넷원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14

사하는 F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F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23호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 당시의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 B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피고 B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B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각 과실 비율은 70 : 3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와 같은 소극적 확인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수리비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14

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 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축타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수리비는 5,936,345원에서 원고의 책임비율을 고려한 4,155,441원(= 5,936,345원 × 0.7,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 A은 피고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부품을 수입하는 비용 등으로 실제 26,324,02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오토바이가 실제로 수리되었는지, 위 돈이 실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부분의 수리를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피고 오토바이의 손상 정도, 피고 오토바이와 유사한 기종의 오토바이의 중고 가격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 오토바이가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A이 주장하는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된다고 선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 오토바이의 적정 수리비용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축타결과는 피고 오토바이의 손상 부위, 손상 부품의 해외 가격, 환율, 수입 및 통관, 운임비 등과 공급업자 마진 등을 감안하여 부품가격을 정하고, 탈착 및 교환 공임은 피고 오토바이가 수입이륜차인 점을 고려하여 부품가격의 15%를 공임료로 산정하는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14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수리비를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차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갑 제7, 19 내지 22호증,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측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대차료는 피고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데 적정한 기간인 3일 동안, 1일당 1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대차사용료 합계 405,000원(= 135,000원 × 3일)에서 원고의 책임비율을 고려한 243,000원(= 405,000원 × 0.7)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① 피고 오토바이와 같이 수리 또는 부품 수급이 어렵고, 그 기간도 보통의 경우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소요되며 그 대차비용도 고가인 경우, 이러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은 이를 소유하면서 그 이익을 누리는 피고 B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수리기간의 대차료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는 취지는 차량 수리로 말미암은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오토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14

3193-11160283-10030517

이는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로서,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하여 통상의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한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 오토바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 또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따라 피고 오토바이의 실제 수리를 위하여 대차가 필요한 기간인 3일 동안의 대차료만 인정한다.

④ 원고의 보험계약 약관은 대차료는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하고, 그 인정기준액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최대 30일)이며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고,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IV. 보험금 지급기준 25 대물배상 3. 대차료)하고 있다.

⑤ 피고 B가 임차한 오토바이는 피고 오토바이와 모델과 연식이 모두 다르고, 피고 오토바이와 동종의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가격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⑥ 현재 보험업계 실무상 신차가격이 10,000,000원 이상인 수입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KT금호렌터카의 일반 자동차의 대차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인정하고 있다.

⑦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피고 오토바이의 중고가격, 이동수단으로서

3193-11160283-1003051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14

3193-11160263-10030517

의 필요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고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 통상적인 경우 발생하는 대차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중고가격과 유사한 중고가격을 형성하는 중형차량을 3일간 대여할 경우의 1일당 대차료인 135,000원을 1일 대차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피고 A에 대하여는 4,155,441원 피고 B에 대하여는 283,5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B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강태훈

 판사 오연수

 판사 김동기

3193-11160263-10030517

3193-11160263-10030517

3193-11160263-10030517



본 판결문은 관할서 인터넷법원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14

[별지]

사고의 표시

(사고의 표시 삭제)

3193-11160263-10030697

3193-11160263-10030697

3193-11160263-10030697

3193-11160263-10030697

3193-11160263-10030697

3193-11160263-10030697